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*서울북부지방검찰청**  
전문공보담당자 이지훈  
전화 02-3399-4866 / 팩스 02-3399-4801

**보 도 자 료**  
2020. 5. 22.(금)

**제 목**      **제자들을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 불구속 기소**

**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**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●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(부장검사 유천열)는 ○○여고 스쿨미투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다각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를 5. 21. 불구속 기소하였음

**㉠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**

○ 피고인

- A○○(55세, ○○여고 前 국어 교사)

○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2011. 3.경부터 2012. 10.경까지 ○○여고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인 피해자 5명을 강제추행 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]

**㉡ 수사경과**

- 2018. 4.        '○○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'(졸업생 구성) 피해사실 신고,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전수조사 및 경찰 수사 의뢰
- 2018. 4. ~11.   피해자들 조사, 피고인 조사 등
- 2018. 12. 7.   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, 불기소(혐의없음) 처분

- 2019. 2. 1.     진정서 접수(진정인 : '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')
- 2019. 4. ~11.   피해자 조사 등 추가 보완 수사
- 2019. 12. 17.   사건 제기
- 2020. 4. 21.    피고인 조사
- 2020. 5. 21.    피고인 불구속 기소

**㉢ 참고사항**

- 종전에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당시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반박하기 어려워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하였음
- 진정서 접수 후 검찰은 전면적으로 기록을 재검토하고 폭넓은 참고인 조사 등 다각도의 보완 수사를 거쳐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탄핵할 만한 증거들을 다수 확인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, 불구속 기소함
- 향후에도 검찰은 교내 미투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 ☑